

대법원 2005. 3. 25 선고 2004다65541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05. 3. 25 선고 2004다6554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0. 20 선고 2004나21113 판결

전문

【원고, 상고인】 김AA(소송대리인 변호사 홍BA)

【피고, 피상고인】 대한민국외 1

【원심판결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0. 20. 선고 2004나21113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유

1.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.

등기명의인 혹은 그 포괄승계인인 등기의무자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자를

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(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0173, 92다10180(병합)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은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판시 각 압류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송파구일 뿐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등기명의인이 아니고, 판시 서울특별시세조례(2001. 9. 29. 조례 3899호) 제6조의 규정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등기명의인인 위 중랑구 및 송파구의 포괄승계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,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위 서울특별시세조례의 해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2.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.

원심은, 가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은 이CA가 1992. 11. 30. 원고에게 위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, 위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유만으로는 이C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,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, 이와 달리 위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이C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고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됨을 전제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음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박재윤(재판장) 이용우(주심) 이규홍 양승태